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\*\*\*\*/ 전송(02)790-8911  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371호

시행일자 2019. 3. 19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동아에스티(주) 의약품 급여정지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903(2019. 3. 18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동아에스티(주) 의약품 87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, 동아에스티(주)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의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결정됨에 따라, **향후 법원 판결 확정결과에 따라 급여정지 시행여부를 다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하여온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□ 행정처분개요

제약사	행정처분내용	비고
동아에스티(주)	○ 급여정지 2개월 : 헵세비어정 10mg 등 87품목  ○ 정지기간 : 2019.6.15.~8.14.	○ 유예기간 3개월 설정 -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,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,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  ○ 요양급여 재 적용일 - 2019.8.15.일부터 요양급여 적용

붙임: 급여정지 87품목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